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. 24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. 24

(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문

나. 개정사유

-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소마을(15호 이하 마을)을 통·폐합하고
-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마을규모가 현저하게 커진 4개 마을 (화순읍 신기리, 대리4구, 계소리 1구, 벽라리 1구)을 분구함으로써 달라진 마을 수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2조 이장의 정원수 조정(현행대비 감 19)
 - 현 행 : 355명
 - 개정안 : 336명
 - 조정내용
 - 과소마을 통·폐합에 따른 23명 감
 - 화순읍 과대마을 분구에 따른 4명 증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15호 미만의 과소 마을을 통·폐합하고 과대화된 마을은 분구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임. 별다른 의견 없음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- 부칙 “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을 “이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과대마을(화순읍 신기리, 대리, 계소리, 벽라리)의 이장정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의결

첨 부 :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)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읍 면 별	법 정 리 명	정 원	비 고
합 계		336	
화 순 읍	교 리	2	
	향 청 리	1	
	만 연 리	6	
	신 기 리	2	
	훈 리	1	
	동 구 리	1	
	유 천 리	3	
	일 심 리	5	
	다 지 리	2	
	광 덕 리	4	
	삼 천 리	4	
	이 십 곡 리	2	
	대 리	6	
	강 정 리	1	
	벽 라 리	3	
	감 도 리	3	
	계 소 리	4	
	도 웅 리	2	
	세 량 리	1	
	연 양 리	2	
내 평 리	1		

읍 면 별	법정리명	정 원	비 고
	서 태 리	2	
	주 도 리	3	
	앵 남 리	2	
	수 만 리	2	
한 천 면	모 산 리	2	
	금 전 리	1	
	한 계 리	2	
	정 리	2	
	가 암 리	2	
	오 음 리	3	
	반 곡 리	2	
	평 리	1	
	정 우 리	1	
	동 가 리	2	
	고 시 리	1	
춘 양 면	석 정 리	1	
	화 림 리	3	
	대 신 리	3	
	회 송 리	2	
	양 곡 리	1	
	용 곡 리	1	
	월 평 리	3	
	가 동 리	1	
	변 천 리	1	
	산 간 리	1	
	가 봉 리	1	
	용 두 리	1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	우 봉 리	1	
	부 곡 리	3	
청 풍 면	풍 암 리	1	
	한 지 리	2	
	어 리	1	
	세 칭 리	2	
	대 비 리	1	
	백 운 리	1	
	청 룡 리	1	
	이 만 리	1	
	신 석 리	2	
	신 리	2	
	차 리	2	
이 양 면	금 능 리	1	
	강 성 리	3	
	용 반 리	1	
	장 치 리	1	
	묵 곡 리	2	
	옥 리	1	
	품 평 리	3	
	오 류 리	4	
	이 양 리	2	
	을 계 리	1	
	송 정 리	2	
	초 방 리	2	
	매 정 리	2	
	연 화 리	1	
	구 례 리	1	
	쌍 봉 리	1	
증 리	1	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능 주 면	남 정 리	2	
	정 남 리	1	
	석 고 리	1	
	잠 정 리	1	
	내 리	1	
	관 영 리	1	
	천 덕 리	2	
	만 인 리	2	
	광 사 리	1	
	백 암 리	2	
	만 수 리	2	
	원 지 리	1	
도 곡 면	대 곡 리	3	
	효 산 리	2	
	월 곡 리	3	
	쌍 옥 리	2	
	평 리	1	
	덕 곡 리	2	
	신 성 리	2	
	천 암 리	1	
	원 화 리	2	
	신 덕 리	3	
	미 곡 리	2	
	죽 청 리	2	
도 암 면	운 월 리	2	
	도 장 리	1	
	벽 지 리	2	
	정 천 리	1	
	원 천 리	3	
	천 태 리	2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	지 월 리	2	
	등 광 리	1	
	내 초 리	1	
	용 강 리	3	
	호 암 리	2	
	우 치 리	1	
	봉 하 리	1	
	왕 정 리	1	
	행 산 리	1	
이 서 면	서 리	1	
	월 산 리	1	
	창 량 리	1	
	야 사 리	4	
	보 월 리	2	
	인 계 리	2	
	영 평 리	1	
	안 심 리	2	
	갈 누 리	1	
북 면	임 곡 리	1	
	옥 리	2	
	서 유 리	2	
	맹 리	1	
	남 치 리	1	
	원 리	1	
	송 단 리	2	
	방 리	1	
	노 기 리	1	
	이 천 리	2	
	길 성 리	1	
	와 천 리	1	
다 곡 리	1	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	
	수 리	1		
	노 치 리	1		
	용 곡 리	2		
동 북 면	독 상 리	1		
	칠 정 리	2		
	천 변 리	1		
	유 천 리	1		
	신 을 리	3		
	가 수 리	3		
	안 성 리	1		
	연 월 리	3		
	읍 애 리	1		
	구 암 리	2		
	연 둔 리	2		
	한 천 리	1		
	남 면	사 평 리	5	
		대 곡 리	2	
검 산 리		2		
운 산 리		1		
원 리		2		
벽 송 리		2		
장 전 리		2		
절 산 리		2		
사 수 리		2		
주 산 리		1		
북 교 리		1		
남 계 리		1		
유 마 리		1		
다 산 리		1		
용 리		2		
내 리		3	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동 변	백 룡 리	2	
	연 도 리	2	
	서 성 리	2	
	국 동 리	1	
	칭 궁 리	1	
	마 산 리	1	
	무 포 리	2	
	경 치 리	2	
	복 암 리	3	
	오 동 리	3	
	천 덕 리	3	
	장 동 리	2	
	운 농 리	3	
	우 호 리	3	
	대 포 리	3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읍 면	법정리명	정 원	
		현 행	개 정 안
화 순 읍	신 기 리	1	2
	대 리	5	6
	벽 라 리	2	3
	계 소 리	3	4
	앵 남 리	3	2
	수 만 리	4	2
한 천 면	정 우 리	2	1
춘 양 면	대 신 리	4	3
	양 곡 리	2	1
	용 곡 리	2	1
이 양 면	율 계 리	2	1
능 주 면	만 인 리	2	1
도 암 면	지 월 리	3	2
이 서 면	창 랑 리	2	1
	인 계 리	3	2
	영 평 리	2	1
	안 심 리	3	2
북 면	송 단 리	3	2
	다 곡 리	2	1
	용 곡 리	3	2
동 북 면	안 성 리	2	1
남 면	사 수 리	3	2
	남 계 리	2	1
동 면	서 성 리	3	2
	청 궁 리	2	1
	천 덕 리	4	3